

『 하나 생계비계좌 』 요약 상품설명서

[기본정보]

(2026.02.02 기준, 세전)

구분	내용														
상품특징	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														
상품유형	저축예금(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비대면계좌개설 ■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 비대면 거래의 경우 월~토 07:00~21:30까지만 신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기본금리	연 0.10% (가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에 고시한 기본금리 적용)														
수수료 우대서비스	<table><tr><th colspan="2">수수료구분</th><th rowspan="2">이 통장으로 거래시</th></tr><tr><td rowspan="2">당행자동화기기 이용</td><td>마감후 현금인출</td><td rowspan="5">면제</td></tr><tr><td>타행이체</td></tr><tr><td>당행폰뱅킹(ARS),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td><td>타행이체</td></tr><tr><td colspan="2">납부자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td></tr><tr><td colspan="2">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td></tr></table>		수수료구분		이 통장으로 거래시	당행자동화기기 이용	마감후 현금인출	면제	타행이체	당행폰뱅킹(ARS),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납부자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수수료구분		이 통장으로 거래시												
	당행자동화기기 이용	마감후 현금인출		면제											
		타행이체													
	당행폰뱅킹(ARS),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납부자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상품 전환	X	불가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 또는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의 전환 불가)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용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유의사항]

※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제한사항	■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개월 간(매월 1일부터 말일) 누적 합산 입금 금액을 25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주1) ■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결제·납부 부족금액 또는 결제·납부취소 초과금액을 별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주2) ■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개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됩니다. (주1) 다만,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개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게 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간주함. (주2) 신용카드 또는 공과금 등 대금납부의 결제금액 연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	---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 휴먼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시 휴먼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하나 생계비계좌 』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예시:유선 가입시는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등),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하나 생계비계좌』
- 상품 특징 : 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

2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증서)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6.02.02 기준, 세전)

구분	내용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가입금액	0원~최대 250만원	상품유형	저축예금(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비대면계좌개설 ■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비대면 거래의 경우 월~토 07:00~21:30까지만 신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기본금리	연 0.1% (가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에 게시한 기본금리)		
거래제한사항	■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개월간(매월1일부터 말일) 누적 합산 입금 금액을 250만원으로 제한합니다.(주1) (주1) 다만,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개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게 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간주함.		
	※입금금액 제한 예시		
	일자	입금액	출금액
	2월 2일	1,500,000원	0
	2월 15일	0	1,000,000원
	2월 21일	1,000,000원	0
	2월 28일	500,000원*	0
	* 해당월 누적입금금액(2,500,000원) 한도 초과로 입금 처리 불가하며 최대입금가능금액 0원		
	일자	입금액	출금액
	3월 1일	0	500,000원
	3월 15일	300,000원	0
	3월 20일	0	1,300,000원
	3월 25일	2,500,000원*	0
	* 기입금된 금액(300,000원)이 있어 입금 처리 불가하며, 최대입금가능금액은 2,200,000원		
	■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개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납부 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결제·납부 부족금액 또는 결제·납부취소 초과금액을 별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주2) (주2) 신용카드 또는 공과금 등 대금납부의 결제금액 연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 신용카드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 처리 예시(4월 청구금액 3,000,000원 가정시, 결제일 25일) <table><tr><th>일자</th><th>입금액</th><th>출금액</th><th>잔액</th></tr><tr><td>4월 1일</td><td>2,500,000원</td><td>0</td><td>2,500,000원</td></tr><tr><td>4월 12일</td><td>0</td><td>500,000원</td><td>2,000,000원</td></tr><tr><td>4월 25일</td><td>0</td><td>2,000,000원 (카드대금 출금)</td><td>0원</td></tr><tr><td>4월 25일</td><td>1,000,000원*</td><td>0</td><td>0원</td></tr></table> * 카드결제 부족 대금 1,000,000원 입금 처리 불가하며(해당월 누적입금금액 2,500,000원 초과), 별도 방법으로 부족 대금 처리하여야 함.			일자	입금액	출금액	잔액	4월 1일	2,500,000원	0	2,500,000원	4월 12일	0	500,000원	2,000,000원	4월 25일	0	2,000,000원 (카드대금 출금)	0원	4월 25일	1,000,000원*	0	0원
일자	입금액	출금액	잔액																				
4월 1일	2,500,000원	0	2,500,000원																				
4월 12일	0	500,000원	2,000,000원																				
4월 25일	0	2,000,000원 (카드대금 출금)	0원																				
4월 25일	1,000,000원*	0	0원																				
수수료 우대서비스	※ 이 통장을 보유하는 경우 수수료 항목 무제한 면제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우대 제공)																						
	수수료 항목		우대내용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함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납부자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은행 외부에 설치된 CD기(또는 ATM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또는 ATM기)에서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가 제공되지 않음.																							
이자지급 및 이자지급방법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해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 - 이자계산기간: 예금일(또는 원가일)로부터 지급일(또는 원가일)전일까지의 기간 - 이자결산일: 매년 3,6,9,12월의 제3금요일 - 이자지급(원가)일 : 이자결산일 익영업일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범위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담보제공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불가	양도·명의변경	양도 불가																				
상품전환	불가(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 또는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의 전환 불가)																						
거래중지	예금잔액 및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계·제휴 서비스	해당 없음	예금 해지시 불이익	해당 없음																				
휴면예금 및 출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 고객의 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bank.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여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3

유의사항

-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금지 생계비 이내로 개인별 계좌 잔액 및 1개월간(매월 1일부터 말일) 누적 합산 입금 금액을 25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 카드결제 또는 공과금 납부 용도로 이 계좌를 지정할 경우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여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개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됩니다.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부록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이 예금은 하나은행 포용금융상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